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-49호

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(2010.06.0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25호(2013.07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4호(2014.05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3호(2017.06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4호(2018.02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6호(2019.0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76호(2020.09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6호(2023. 10. 12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-97호(2014. 9. 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-116호(2018. 12. 2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0-156호(2020. 10. 29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15호(2021. 1. 2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-125호(2024.10.24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,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1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-220번지 일대
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72,822㎡
 라. 사업시행자의 명칭 :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운정)
 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, 2층
 바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(최초)2021.01.25. (변경)2026.03.11.
 사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내용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)

구 분		대지면적(㎡)	동수	층 수	세대수	건축연면적(㎡)
공동주택	소 계	53,400.9834	14	지하4층~지상28층	1,499	246,004.4927
	분 양	47,246.8700	12	지하4층~지상28층	1,237	218,301.3671
	임 대	6,154.1134	2	지하4층~지상28층	262	27,703.1256
상 가		369.0166	-	지하2층~지상1층	26호	1,699.9640

2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총 계 (㎡)	택 지(㎡)				정비기반시설 등(㎡)				
	소 계	공동주택	단독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 계	도로	공원	문화 시설	공공 시설
72,822	54,255	53,770	-	485 (종교시설)	18,567	8,056	4,350	5,571	590

3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공급대상 (㎡)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상가 전용 면적(㎡)
	계	39㎡	49㎡	51㎡	59㎡			84㎡			106㎡		
					59A	59B	59C	84A	84B	84C	106A	106B	
계	1,499	106	106	50	319	27	66	316	330	107	48	24	975,2249
조합원	844	0	0	0	163	18	38	251	239	87	24	24	
보류시설	24	0	0	0	24	0	0	0	0	0	0	0	
일반분양	369	0	0	0	132	9	28	65	91	20	24	0	
임 대	262	106	106	50	0	0	0	0	0	0	0	0	

※ 관련 법령에 부적합 한 분양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, 향후 관리처분계획(분양계획) 변경될 수 있음

4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(변경)

구 분 (㎡)	신 설(㎡)				용도폐지(㎡)			
	도로	공원	문화시설	공공시설	도로	공원	공공공지	기타
구 모	8,056	4,350	5,571	590	7,445.21	3,990.8	711.31	40.8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-51호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,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, 도시계획시설[도로 및 공원(주차장)] 실시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30호(2002.02.15),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동작구 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, 동작구 고시 제2024-153호(2024.12.12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[도로 : 종로3-1호선, 소로2-153호선, 소로2-1호선, 소로2-2호선, 어린이공원(주차장)]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6년 3월 1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사업명 :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
 -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최현정 (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74,7층)
- ※ 공동사업주체: GS건설(주) 임병용(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)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· 면적 및 규모
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